

## 제7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12. 2.(목) 10:5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 바. 의결사항

###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건 - (2010-71-295)

-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40차 위원회(10. 7. 8) 보고 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 주요 내용

##### ① 주요 변경사항

###### ① 방송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될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사항

- 방송통신콘텐츠의 구체적 범위는 방통위 소관 법령의 범위내로 하되, 그 구체적 사항은 방통위와 문화부가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규정

###### ② 방송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될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하므로 미디어렐 관련 법률 개정 후 광고관련 사항을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광고조항 삭제

###### ③ 채납분담금에 대한 증가산금 제도

- 영세 방송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규제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

###### ④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 관련 사항

- 표준심의회 설치 및 방송통신표준제정에 관한 사항은 유지하되, 한국산업표준과의 중복방지를 위해 지경부와 협의규정 마련

##### ②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회 위원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 심의회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안 제15조)

- (방송사 분담금) 분담금 징수율은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 (분담금 경감)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 이상인 경우 50%,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30% 경감(안 제13조제2항)

- (지상파방송사 분담금 징수) '11년부터 분담금 징수체계를 KOBACO 원천징수에서 한국전파진흥원(KORPA)에 위탁하여 사후 징수방식으로 변경
- '13년까지는 당해연도 분기말에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부과·징수, '14년부터는 다른 방송사와 동일하게 다음연도에 부과(부칙 제2조)

② 전달기관 지정 대상과 절차(안 제4조)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와 기반조성, 방송통신 연구·개발, 방송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 분야별 전달기관을 방통위 의결로 지정

③ 방송통신 표준화(안 제22조)

- 방송통신표준화의 대상을 방송통신 기술·설비 및 기자재·망·서비스 등으로 정함
-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구성·운영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함

④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안 제23조)

- 재난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지상파텔레비전·보도전문 채널사업자에게 부과
- 재난대책본부는 방통위 직원 및 방송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하고 물자동원, 복구 활동 지휘, 재난지역의 방송통신지원 등을 수행함

⑤ 기타

- 방송통신기술지도(안 제8조),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조항(안 제19조~제22조) 등을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에서 이관

**2)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 (2010-71-296)**

- o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35조제2항 및 「시청자불만 처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원안대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함.

**<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명단(총 9인) >**

구 분	성 명	성 별	전·현 직
위원장	형태근	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송 등 언론 분야	김윤영	남	전 원주MBC 사장
	이진희	남	스포츠한국 부사장
교육, 문화계	구종상	남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교수
	정기현	여	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은미	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법조계	방희선	남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시청자 단체	강혜란	여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기타 전문가	윤장신	남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임기 : 위촉일로부터 1년

### 3)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무선데이터 서비스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10-71-275~277)

○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피심인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SKT 62억원, KT 15억원, LGU<sup>+</sup> 7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위반내용

① 금지행위 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위반

- 메뉴에 '배너(광고/이벤트)'를 삽입하고 과금(SKT, KT, LGU<sup>+</sup>)

·무선데이터서비스 메뉴화면에 이용자의 이용의사와 무관하게 '배너(광고/이벤트)'를 삽입하고 이에 대해 데이터통화료(텍스트요율)를 부과

- 무선데이터 접속 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 데이터 통화료를 과금 (SKT, KT, LGU<sup>+</sup>)

·재화와 용역에 대한 요금 정보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일반 상관행이고, 피심인의 약관도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데이터서비스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

-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 과금 (SKT, KT)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데이터 패킷의 일부만 전송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해당 패킷 전부를 재전송할 때 이중과금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전송과정에서 전송되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과금하지 않아야 됴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송되었던 데이터의 프로토콜 신호에 대하여 과금

-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특정기업고객에게 차별적으로 제공(SKT)

·SKT는 2개 회사에 대해서 이용약관과 달리 무료로 제공하거나 약관요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95%이상 할인)으로 제공('06. 9. ~ '08. 12.)

② 업무 처리절차 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2호 위반

- 별도 신청·해지 절차 없이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SKT, KT, LGU<sup>+</sup>)
- 별도 신청·해지절차 없이 이용자의 휴대폰 조작(접속버튼→요금안내 페이지 확인버튼)을 통하여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본의 아닌’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는 등 민원 다량 발생
- 요금의 사전예측·사후확인이 곤란한 종량요금제(SKT, KT, LGU<sup>+</sup>)
- 피심인은 종량제 무선데이터 유형을 4~5개로 복잡하게 분류하고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평균적인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할(한) 데이터가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떤 요율이 적용될지(된 것인지) 사전·사후적으로 예측·확인 하기 곤란한 반면 피심인은 무선데이터 정액제 요율을 단일요율로 정하고 있음
- 데이터 패킷의 헤더(header)에 이용자정보를 비효율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과금(SKT, KT)
- SKT는 데이터 패킷의 헤더(header)에 사용자 정보(‘브라우저 타입’, 4byte)를 중복 기재하고 있고, KT는 이용자 정보를 비효율적으로 복잡하게 나열하고 이에 대해 과금

② 처분내용

① 시정명령

- 금지행위의 중지
-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삽입되는 ‘배너(광고/이벤트)’와 모든 ‘요금안내’ 데이터에 대한 과금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하지 말 것(SKT, KT, LGU<sup>+</sup>)
-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프로토콜 신호 포함)에 대한 과금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하지 말 것(SKT, KT)
- 약관과 다르게 ‘기업데이터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하지 말 것(SKT)
- 업무처리절차 개선(SKT, KT, LGU<sup>+</sup>)
- 3개월 내에 최소한의 데이터량으로 메뉴검색이 가능하도록 ① 무선데이터서비스 접속 직전 화면에 표시되는 ‘접속하기’ 버튼과 동등한 위치와 크기로 “글자로만 메뉴보기” 버튼을 생성하여 피심인이 제공하는 메뉴서비스에 대해서는 텍스트로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거나, ② 메뉴화면 전체에 대해 비과금하되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해지절차(종이계약서, 전화, 인터넷을 통한 절차)를 3개월내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무선데이터 종량제 적용을 받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과 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을 우편 통지를 포함하여 개별 고지할 것

·3개월내, 이용자정보를 포함한 무선데이터 패킷의 헤더영역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되도록 개선하고, 중복기재가 필요한 경우 중복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금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6개월내, 종량제 무선데이터 통화료의 사전예측·사후확인이 용이하도록 ① 현재 복수요율을 단순화하거나, ② 현재 복수요율과 신설 단일요율 방식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이용약관에 반영(단, 단일요율 수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세부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것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의 경우, 이용자가 복수요율과 단일요율 간에 선택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는 단일요율을 우선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단일 종량제 요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신청 방법을 우편 통지를 포함하여 개별 고지할 것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 요금으로 복수요율이 적용될 경우, 요금고지서에 각 데이터 유형별 사용량과 해당 요율을 기재할 것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및 대리점에 공표(SKT 9일, KT 10일, LGU+ 8일)

- 이행결과 보고

·시정명령에 대하여 각각의 이행기간 만료후 10일 내에 이행결과를 보고할 것

## ② 과징금 부과

- 금지행위 위반행위 중 '배너(광고/이벤트) 과금행위'와 '요금안내 과금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SKT에 대해 62억원, KT에 대해 15억원, LGU+에 대해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 사. 보고사항

### 1) 수신료 승인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비공개)

### 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방송법상에 제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평가항목 및 척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 주요 내용

##### ① 평가항목 및 척도 간소화

- 방송평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항목은 삭제하고,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

##### ② 재허가(승인) 심사항목과의 차별화

- <경영의 적정성>과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 항목은 삭제하고, <재무의 건전성>과 <경영투명성 확보> 항목은 간소화하여 단일항목으로 통합

##### ③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합평가방식(정성평가) 도입

- 영역별로 정성평가를 도입, 종합평가가 가능하도록 방법론 개선

#### < 방송평가 영역별 정성평가 도입 내용 >

- 내용영역 : 방송심의규정 위반건수(계량)  
+ 자체심의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일부 정성평가)
- 편성영역 : 법정편성비율 위반건수(계량)  
+ 방송편성에 관한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정성평가)
- 운영영역 :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계량)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정성평가)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의 경우,

- 지상파방송 :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등 평가
- SO/위성방송 :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의 공정거래 등 평가
- 홈쇼핑PP : 홈쇼핑과 납품업체간의 공정거래 등 평가

④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신설(SO·위성·PP) 또는 강화(지상파TV)

- SO·위성방송의 장애인 시청지원프로그램 신호 누락여부 및 자체채널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실적을 함께 평가

※ 지상파TV는 자막방송의 만점기준(50%→70%)을 강화하고, 보도 및 홈쇼핑PP의 경우는 자체채널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평가

⑤ 방송사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여부(관리책임자 지정, 취급방침 공개 등) 및 활동내역 (보호조치 내용, 누설금지 및 파기 원칙 준수 등) 등을 종합 평가

※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

⑥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홈쇼핑에 대한 평가 강화

- 기존 홈쇼핑PP의 운영영역 배점을 확대(250점→300점)하여, 홈쇼핑의 중소기업 보호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항목신설,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 기준강화

※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주요내용 : 판매대금 감액 또는 지연지급 여부, 판매장려금 부담 여부,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담여부, 인수 후 분실상품에 대한 책임 전가 등

**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하는 등 방송법시행령 개정('10. 10. 1)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방송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②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

※ 평일 : 7시~9시, 17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③ 동·하계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경우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시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④ 재난방송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차구 수정

- '방송법 제75조'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로 변경

⑤ [별표1]의 '제5조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제6조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으로 정정

## 아. 기 타

###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12. 7(화),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 6. 폐 회 (16:30)

※ 11:55 정회, 15:00 속개